

주민조례 개정 청구취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조례청구가 있어 동법 제6조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7월 26일

예 천 군 의 회 의 장



1. 청구 조례명 :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청구인 대표자
 - 가. 성 명 : 유 보 상
 - 나. 주 소 : 예천군 풍양면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2.7.25.(월)
4. 서명 요청기간 : 2022년 7월 27일부터 2022년 10월 26일까지
5. 연서 주민수 : 953명 [청구권자 총수(47,627명)의 1/50 이상]

6. 조례개정 청구취지 및 이유

축사신축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갈등이 점차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어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환경보전이라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고, 인근 시·군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이 배치되는 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축사 허가 신축으로 인한 예천지역 환경보호 및 환경오염 예방, 생활환경의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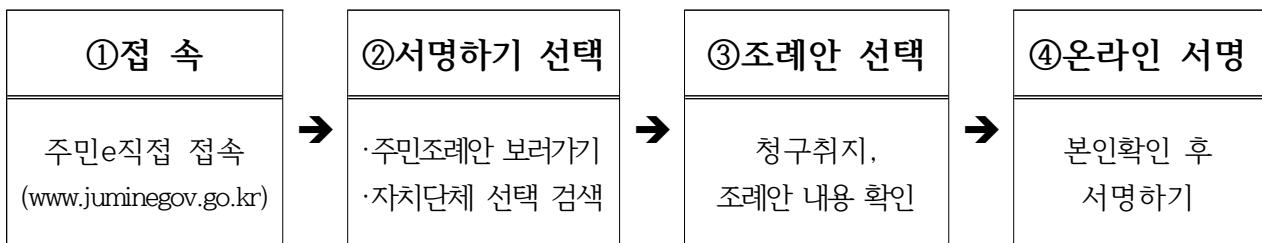
7. 주요내용 :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4호 부터 제16호까지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함. (붙임 조례안참조)

8. 전자서명 절차 안내

가. 준비물 : 개인용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범용)

나. 전자서명 시스템 인터넷 주소 : www.juminegov.go.kr

다. 전자서명 하는 방법



라. 전자서명 취소 방법

① ~ ③ 과정은 동일 → ④ 과정에서 ‘취소하기’ 버튼 선택

9.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천군의회 의사팀 (☎054-650-65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